

의안번호	2205459
의 퇴 인	남인순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9.
추계번호	24C4967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6조(청년의 생애과정 이행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세대의 자립과 사회진출 등 생애과정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7조(포용적인 가족 정책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가족,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, 한 부모 가족, 입양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19조(결혼 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나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22조(국내 이주민의 정착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 국내로 이주하는 사람의 정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26조(사회 보장 지속가능성 제고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6	안 제31조(지역 소멸 대책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활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32조(지역 격차 해소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서 미래 세대의 규모, 지역별 고령화의 속도, 경제·산업구조 및 노동 환경, 주거 환경의 변화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	의무규정
8	안 제33조(지역 정주기반의 확충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보육·교육·의료·주거 및 교통·문화기반의 확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9	안 제34조(지방 자치단체 자립 역량 강화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연계·협력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10	안 제35조(인구 특별회계의 설치)	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·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(청년의 생애과정 이행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7조(포용적인 가족 정책)	
3	안 제19조(결혼 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)	
4	안 제22조(국내 이주민의 정착)	
5	안 제26조(사회보장 지속가능성 제고)	
6	안 제31조(지역소멸 대책)	
7	안 제32조(지역 격차 해소)	
8	안 제33조(지역 정주기반의 확충)	
9	안 제34조(지방자치단체 자립 역량 강화)	
10	안 제35조(인구특별회계의 설치)	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현행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을 「인구정책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

- 동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·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「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05601) 시행의 전제가 되는 법률안임
 - － 인구총괄부 신설과 관련된 추가재정소요는 「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05461)의 추계서에서 다루므로, 본 추계서의 추계 대상에서 제외
- 동 전부개정안의 조항 중 현행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은 기존 사업이 유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 - － 전부개정안의 조항 중 일부는 정책의 대상을 기존 ‘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’에서 ‘인구구조 변화’로 변경하고 있어 정책 범위를 인구의 불균형 분포,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그 여부 및 구체적인 정책 범위를 알 수 없음

[표 1] 현행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전부개정안의 유사·동일 조항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」	현행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안 제8조(인구정책 기본계획)	제20조(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)
안 제9조(연도별 시행계획)	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
안 제11조(인구정책심의위원회)	제23조(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)
안 제13조(인구정책에 대한 조사·분석·평가)	제29조(조사 및 연구)
안 제14조(전문 조사·연구기관의 지정 등)	제29조(조사 및 연구)
안 제15조(인구감소 대책)	제7조(인구정책)
안 제18조(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)	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제1항·제3항
안 제20조(일·가정 양립)	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제2항
안 제21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	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안 제23조(고령사회 대책)	제15조의2(노후설계)
안 제24조(세대 간 통합 등)	제17조(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)
안 제25조(고용과 소득보장)	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
안 제27조(생활환경과 안전보장)	제13조(생활환경과 안전보장)
안 제28조(평생교육)	제15조(평생교육과 정보화)
안 제29조(취약계층에 대한 배려)	제16조(취약계층노인 등)
안 제30조(고령친화 환경 조성)	제19조(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)
안 제41조(전문인력의 양성)	제28조(전문인력의 양성)
안 제42조(조사 및 연구)	제29조(조사 및 연구)
안 제43조(민간의 참여)	제30조(민간의 참여)
안 제44조(인구의 날)	제30조의2(인구의 날)
안 제45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	제31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
안 제46조(지원)	제32조(지원)

□ 안 제16조·제17조·제19조·제22조·제26조·제31조~제35조 등의 경우 현행법에 유사 조항이 없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

- (안 제16조~제22조)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청년, 다양한 가족, 결혼·출산을 위한 주거, 국내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여부 및 그 규모를 알 수 없음
 - 현재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「청년정책 기본법」에 따라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 및 안정적인 삶 영위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

- 현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부부 가족,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, 한부모 가족, 입양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
- 현재 국토교통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결혼·출산을 위하여 임대주택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
- 현재 여성가족부는 국내 이주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
- (안 제16조) 현 시점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하기 어려움
- (안 제31조~제34조)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역소멸 및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책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여부 및 그 규모를 알 수 없음
 - 현재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「2024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」(관계부처 합동)에 명시된 2024년 예산은 8조 8,896억원(국비, 지방비, 민자 등 포함)
- (안 제35조) 개정안에 따라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차입에 대한 이자 상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필요 재원 규모와 장기 및 일시 차입 여부, 이자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